오산시 지명위원회 조례

제정 1989년 1월 1일 조례 제 9호
개정 1989년 3월 30일 조례 제 116호
개정 2001년 10월 31일 조례 제 687호 부칙
일부개정 2011년 12월 14일 조례 제1175호
(행정기구 설치조례)
일부개정 2017년 4월 3일 조례 제1563호
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 2019년 9월 30일 조례 제1739호
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 2022년 11월 17일 조례 제2015호
(제명개정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오산시지명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22. 11. 17]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.〈개정 2011. 12. 14, 2017. 4. 3, 2019. 9. 30, 2022. 11. 17〉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관계공무원
2.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인 이상
3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시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,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

제3조(임기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
1. 지명의 제정, 변경 또는 조정
2.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
3.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

제5조(지명의 조사)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.

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,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(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)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.

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으며,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.

제6조(의견청취)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한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동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.

제7조(수당등)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회의록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1. 회의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
3.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
4.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
5. 기타 중요한 사항

제9조(시행규칙)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1989. 3. 30 조례 제116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01. 10. 31 조례 제687호 부칙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11. 12. 14 조례 제1175호, 행정기구 설치조례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⑫ 까지 생략

⑬「오산시지명위원회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문화공보담당관”을 “문화체육과장”으로 한다.

⑭ 부터 ⑳ 까지 생략

부칙 〈2017. 4. 3 조례 제156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㉜ 까지 생략

㉝「오산시지명위원회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문화체육과장”을 “문화체육관광과장”으로 한다.

㉞ 생략

부칙 〈2019. 9. 30 조례 제1739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규칙 제863호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이 시행되는 날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⑥ 까지 생략

⑦ 「오산시지명위원회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문화체육관광과장”을 “문화예술과장”으로 한다.

⑧ 부터 ㉑ 까지 생략

부칙 〈2022. 11. 17 조례 제2015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